

연구논문

환경평가 대상지역의 설정방안에 대한 연구

선효성 · 최준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년 12월 17일 접수, 2012년 2월 3일 승인)

A Study for Target Area Set-up Pla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un Hyosung · Choi Jungyu

Korea Environment Institute

(Manuscript received 17 December 2011; accepted 3 February 2012)

Abstract

This paper seeks for the set-up plan in the reasonable target area of environmental assessment. Domestically, the target area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s set up by the adjustment of opinion collection about the assessment scope result of an environmental factor. In a foreign country, the boundary of the target area for a development project is established with the environmental, economical, and social viewpoint based on the standard for significantly environmental impa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at home and abroad, the first set-up plan for the reasonable target area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s the preparation of the detailed term definition related to the target area of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second is the arrangement of the judgement standard for significantly environmental impact. The quantitative assesment item can apply the present standard or regulation, and the qualitative assessment item can establish the standard based on factual and objective data. The last is the preparation of the reference material or the guideline for deciding the initial target area by the judgement standard and determining the final target area by opinion collection in the stage of scoping.

Keywords : Target area, Environmental assessment, Threshold of significance, Scoping

1. 서론

개발계획의 환경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현황조사, 주민의견수렴, 누적영향평가의 지역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국내 환경평가와 관련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에서 주요한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개발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계획으로 인한 중요한 환경영향의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지정하고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평가대상지역을 조정하고 있다.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개발계획의 준비단계, 시행단계, 운영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대상지역과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범위 설정방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재구 외(2007)에서는 사적장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적정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영하 외(2008)에서는 생활환경분야(대기질 등)를 중심으로 누적영향평가를 고려한 평가범위 산정방안을, 조한나 외(2010)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수질 평가범위 설정방안을 명시하였다. 또한 Graham(2008)에서는 소음 및 경관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각 항목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범위 설정방법의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였다.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지역 설정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량적 및 정성적 관점을 동원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구체적인 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환경평가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기

반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평가대상지역 설정현황의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대상지역 설정방안을 모색하였다.

II.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현황

1. 관련 규정 검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조사범위 파악과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적인 과정으로 스코핑 단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평가와 관련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해 개발계획으로 인한 중요한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제시하고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환경부, 2010)에서는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시 검토항목 및 검토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회·경제·환경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요성이 높은 검토항목 선정과 항목별 검토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발계획의 사회·경제·환경적인 검토내용과 검토항목 및 검토범위 등을 포함한 사전환경성검토의 주요 사항을 대상으로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영여부 및 실천계획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 및 범위를 도출하고 이전에 추진된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의 설정결과 및 추가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Table 1. Selection of review item and scope in PERS of administrative plan

검토 항목 · 범위 설정내용		주요 고려사항
계획의 영향범위	계획이 미치는 영향 범위	계획의 사회 · 경제 · 환경적 파급효과와 계획으로 인한 영향의 시간 · 공간적 범위를 개괄적이고 정성적인 형태로 파악하여 제시
	계획과 관련된 주요 쟁점 도출	해당계획이 사회 · 경제 · 환경 분야에서 국내 · 국제적으로 관심을 유발하거나 국지적 쟁점, 인근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회 · 경제 · 환경 분야의 중대한 사항을 도출
검토항목 · 범위 설정	환경영향요소 추출	개발계획의 종류 및 성격, 입지여건,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고려할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여 영향의 정도에 따라 상 · 중 · 하로 구분 제시
	검토항목 · 범위 설정	추출된 환경영향요소를 토대로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세부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별 중점검토, 일반검토, 제외항목으로 구분하고 그 검토범위 등을 설정하되 설정한 사유를 명시
	환경현황 조사 항목 및 영향예측 항목, 범위, 시기, 회수 등	설정된 검토항목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현황조사항목과 영향예측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 · 예측범위, 조사시기, 회수 등을 제시하며 검토대상지역의 환경영향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제시한 내용		개발계획의 영향범위, 검토항목 · 범위 설정내용, 기타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및 그에 따른 실천계획을 명시

출처: 환경부, 2010,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Table 2. Determination of assessed target area, item, and scope in protocol of EIA

평가계획서 고려항목	작성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 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환경영향의 예측 · 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평가 항목 및 범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개요 및 계획안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요소를 정리한다. - 지역특성의 파악을 통하여 지역의 주요 이슈 및 영향 대상을 확인한다. -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주요 논의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안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한다. - 상기 세 가지 항목의 내용을 토대로 영향 요소, 요인, 항목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 환경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을 정한다. - 평가항목별로 조사 · 예측 · 평가 방법 및 범위를 정한다.

출처: 환경부, 2008, 환경영향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Table 3. Example of assessed target area in EIA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평가항목		평가범위 선정기준	평가범위
대기환경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 운영시 연료사용 및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영향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수환경	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 부지정지로 인하여 강우시 토사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용하천 	사업지구 및 00천
토지환경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 토지피복 유형별 면적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지형 · 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 절 · 성토에 따른 지형 및 지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내
자연생태환경	동 ·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 · 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km 이내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 지장물 철거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 · 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에 건설장비 가동 및 운영시 유발교통량에 의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지역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15km
	위락 ·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 · 성토 공사로 인하여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 건물의 입지로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와 주변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출처: 환경부, 2008, 환경영향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결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계획서는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결정 및 조사·예측·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평가항목·범위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평가대상지역은 객관적 및 과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설정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및 개발지역의 특성과 환경영향의 중요도에 따른 평가항목 선정 및 평가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2. 적용사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대상지역, 평가항목, 평가범위를 적용한 사례가 Table 3이다. 정량적 접근방법이 가능한 평가항목(소음 등)의 경우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영향이 미치는 정량적 영역을, 정성적 접근방법이 적용되는 평가항목(경관 등)의 경우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을 평가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유도한 기준이나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III. 국외 평가대상지역 설정 현황

1. 평가대상지역의 의미

평가대상지역의 경계 설정은 스코핑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중요한 환경영향이 전파되는 범위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서, 환경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누적적인 사항과 더불어 긍정적 및 부정적인 관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EPA, 1969)

평가대상지역의 공간적 경계는 프로젝트 특성, 영향 정도, 영향을 받는 환경의 민감성, 자료 활용도, 자연적 경계 등에 의존한다(European Communities, 1999). Clark(1994)에서는 공간적 경계를 행정적

및 지형적 경계가 아니라 환경영향이 전파되는 거리로 설정하고 있다. Canter *et al*(1995)에서는 공간적 경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환경특성간의 자연적 관계, 사회·경제적 환경특성간의 인간적 관계, 예상되는 영향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EPA, 1969)에서는 평가대상지역 경계를 환경영향이 전파되는 거리로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누적적 특성과 승인기관의 결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법(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에서는 스코핑 과정에서 개발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개발지역 주변의 지자체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평가대상지역 설정방법 : 중요성 한계점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CEQA)에서는 개발계획의 평가대상지역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요성 한계점(Threshold of significa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Ronald, E. B. *et al*, 1996) CEQA에서는 개발계획으로 인해 중요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결정을 주요 논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환경평가의 단계에서 중요성 한계점을 정의하고 중요한 환경영향이 한계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중요성 한계점의 개념은 환경영향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Standard)이나 표준(Criteria)으로 정의되며 환경영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법적 기준, 연구 및 조사 결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중요성 한계점을 설정하는 방안을 정리한 것은 Table 4와 같다. 한계점 설정을 위해 과학적 및 사실적 근거에 기반한 정량적 및 정성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며 가능한 경우 정량적 기준을 선호하고 있다. 한계점 설정방안의 하나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법령 등의 행정적인 규정 적용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장

Table 4. Set-up on threshold of significance in environmental impact

구분	내 용
1	한계점 기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인 한계점 기준들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2	교통량, 대기질 기준 등과 같이 사실, 채택된 정책(미하 등의 사회적 기준 등), 근거가 되는 참고자료 등에 기반한 한계점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사실적 근거는 한계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한계점 기준에 근거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환경영향에 대한 명확한 한계점 기준이 없거나 관련 정책이 모호하든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에 대한 한계점 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다.
4	국가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계점 기준들을 조화시켜야 한다. 특히, 대기질 및 수질 관리부서 등과 같이 규제기관의 기술적인 한계점 기준들은 조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5	한계점 기준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6	적절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수용될 경우에는 즉시 한계점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7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정성적보다 정량적인 한계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8	가능하다면 현재의 기준이나 규정에 근거한 한계점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9	법령이나 결의안 등에 의한 대중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계점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10	개발계획의 초기 검토단계에서 한계점 기준의 적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나의 문서에 모든 한계점 기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Ronald, E. B. *et al*, 1996, CEQA Deskbook

부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기준을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조화시키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한계점 설정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승인기관,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계점 설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충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한계점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3. 시사점

개발계획의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는 국외의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환경영향이 전파되는 공간적 경계라는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주관적 측면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일관되면서 객관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환경영향의 중요성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스코핑 단계에서

개발계획으로 인해 중요한 환경영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환경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근거 수립을 통해 환경평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IV.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안

1. 기존 평가대상지역 설정의 문제점

국내 개발계획의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지역과 관련한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대상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개발계획의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준이나 근거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2011)에서는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으로 개발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정량적 및 정성적 판단을 수행하기

Table 5. Definition comparison of terms on target area of environmental assessment

용어	기존 내용	제안 내용
평가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 ⁽¹⁾	사업시행으로 인한 평가항목별 평가범위를 포괄하는 지역
영향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 ⁽²⁾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누적적, 단기적 및 장기적,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
평가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한 평가항목별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한 범위

출처: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②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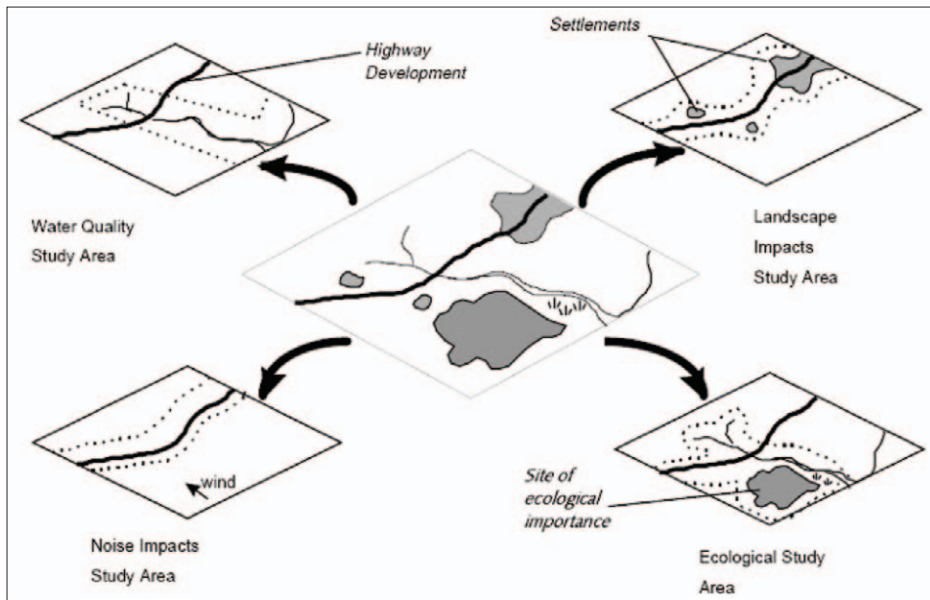


Figure 1. Example of target area set-up in environmental assessment

출처: European Communities, 1999,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indirect and cumulative impacts as well as impact interactions

위한 명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 자료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셋째, 스코핑 단계에서 적정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유도하기 위한 참고자료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 2008)이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작성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평가대상지역의 효율적인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안

(1)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선행단계로서 평가대상지역과 관련한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한 기존의 용어 정의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영향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서는 부정

적인 환경영향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발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평가범위에 대한 기존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제안하였으며 정량적 기준이나 정성적 근거를 토대로 설정할 수 있다. 평가대상지역에 대한 기존 정의는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으나, 제안된 내용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평가항목별 평가범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대상지역 정의와 관련한 사례로서 Figure 1을 참조할 수 있다. 고속도로 건설이 이루어지는 개발지역 주변 하천에 대한 일정 지역을 수질의 평가범위로 지정하고,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소음평가범위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계획노선 주변의 주거지역 등을 포함한 경관의 평가범위와 생태학적 보존지역 및 하천 등을 포함한 동·식물상 평가범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평가항목별 평가범위(Figure 1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영역들)를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과 근거

평가항목별 평가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항목 중에서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공식적으로 채택된 법령 등 현재의 기준이나 규정 등을 참조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정량화가 곤란하여 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동·식물상, 경관 등) 연구 및 조사 결과, 보고서, 기타 사실적 및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영향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설정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설정기준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기준에 설정된 기준이나 근거를 대상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타당성과 정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스코핑 단계에서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

개발계획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근거한 평가대상지역의 초기 설정결과를 대상으로 환경성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개발지역의 입지여건 및 환경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코핑 단계에서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마련과 더불어 의견수렴과정에서 개발계획 및 개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대상지역 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참고자료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고 환경평가과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개발계획의 평가대상지역 설정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의 경우 평가대상지역은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조정에 의해 설정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관점을 반영하면서 환경영향의 중요성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계획 평가대상지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국내외 평가대상지역 설정현황의 비교·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내 평가대상지역 설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지역 설정과 관련한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제안하였다. 둘째, 환경영향의 중요성 판단근거로서 정량화가 가능한 평가항목은 현재의 기준이나 규정 등을 참조하고, 정량화가 곤란하여 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사실적 및 객관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영향의 중요성 판단근거에 의한 평가대상지역의 초기

설정과 더불어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평가대상지역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참고자료나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요구된다.

사 사

본 논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강재구, 최준규, 조공장, 주용준, 한명수, 2007, 공산오차를 적용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곡사화기 사격장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제16권 제6호, pp. 495-502.
- 조한나, 송영일, 2010, 산업단지 사업에서의 수질오염 영향범위 설정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부, 2008,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환경부, 2010,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 환경부, 201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2011, 환경성평가 평가대상지역 영향범위 설정 운영 방안 연구.
- Canter, L. W. and Kamath, J., 1995, Questionnaire checklist for cumulative impa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15, 311-339.
- Clark, R., 1994, Cumulative effects assessment: A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Assessment, 12, 319-331.
- EPA, 1969,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European Communities, 1999,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of indirect and cumulative impacts as well as impact interactions.
- Graham, W., 2008, Thresholds and criteria for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mpact significance in environmental statements: 'See no evil, hear no evil, speak no evi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8, 22-38.
- Ronald, E. B., Albert, I. H. and Kenneth, M. B., 1996, CEQA Deskbook.

최종원고채택 12. 02. 22